

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0. 2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창녕 '화왕산 억새꽃축제' 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,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 주관 지역축제·행사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구 안전관리위원회(실무위원회)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사고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실무위원회에서“구 주관 축제·공연·행사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심의”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(안 제9조제5항)

나. “제5항 단서에 따른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 (안 제9조제6항)

다.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 (안 전반)

- 1) 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·운영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”로 개정
- 2) 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”으로
- 3) “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”로
- 4) “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”로
- 5)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종합상황실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종합상황실”로
- 6) “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자문단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”으로 정비하는 등 기타 법률순화 용어로 변경

3. 개정근거

가. 국무총리실 주관 「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」

4. 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09. 12. 24. ~ 2010. 1. 13.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0. 2. 2)

다. 「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·운영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라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·운영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·운영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,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”으로, “같은법시행령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”으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1조에 따라”로,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”으로, “서울특별시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20인이내”를 “20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“육군제5750부대장”을 “육군 제5750부대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“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교육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교육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“서울특별시서부수도사업소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“관할구역안에”를 “관할구역 안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9조에 의한”을 “제9조에 따른”으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잔임 기간”을 “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5일전까지”를 “5일 전까지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”을 “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 주관 축제·공연·행사의 안전관리계획 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심의하는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직원중에서”를 “직원 중에서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

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다만, 구 주관 축제·공연·행사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 대처계획 포함)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.”

⑥ 제5항 단서에 따른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범위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6조에 따라”로,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”로 한다.

제18조제8호 중 “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6조제4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8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호 중 “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9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
본부와 연계된 업무

제19조제1항제4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상황업무”를 “상황 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원업무”를 “지원 업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실무처리”를 “실무 처리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7조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 제4호”를 “제1항제4호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지시에 의하여”를 “지시에 따라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종합상황실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종합상황실”로, “경우이 외의”를 “경우 그 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재난사고시”를 “재난사고 시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수습관련”을 “수습 관련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제19조 제3항”을 “제19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포상 할”을 “포상할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9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3항 중 “범위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자문단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”으로 한다.

제27조 중 “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75조에 따라”로,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안전관리자문단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1인”을 각각 “1명”으로, “10인 이상 20인”을 “10명 이상 20명”으로,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40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0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0조 중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만료전”을 “만료 전”으로, “잔여기간”을 “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요청에 의하여”를 “요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5일전까지”를 “5일 전까지”로 한다.

제3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6조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 안전관리기구의구성·운영조례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,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,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
<p>제2장 <u>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</u></p>	<p>제2장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</u></p>
<p>제3조(설치)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한다)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3조(설치)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
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</p>	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</p>

2. ~ 5. (생략)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.

1. ~ 3. (생략)
4. 육군제5750부대장
5.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교육장
6. 서울특별시서부수도사업소장
7. (생략)
8. 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 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
9. (생략)

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난총괄관리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재난관리팀장이 된다.

③ 위원회 및 조례 제9조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또는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당해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육군 제5750부대장
5.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교육장
6.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
7. (현행과 같음)
8. 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 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
9.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재난총괄관리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재난관리팀장이 된다.

③ 위원회 및 조례 제9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또는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8조(회의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(생략)

제9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,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위원으로 지명된 재난총괄관리담당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난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팀 업무담당이 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 주 관 축제 · 공연 · 행사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,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위원으로 지명된 재난총괄관리담당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재난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팀 업무담당이 된다.

④ (생략)

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단서 신설>

<신설>

제11조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·연구를 의뢰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·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수당) 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6조(위임규정)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장 서울특별시마포구
재난안전대책본부

제17조(설치)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구 주관 축제·공연·행사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⑥ 제5항 단서에 따른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라 조사·연구를 의뢰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·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수당) 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6조(위임규정)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장 서울특별시 마포구
재난안전대책본부

제17조(설치)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
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8조(기능) (생략)

1. ~ 7. (생략)
8.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
9.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 실시
10.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
11.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

제19조(구성 등) ① (생략)

1. ~ 3. (생략)
 4.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하는 국·소의 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. 상황실장은 수습주무부서의 과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재난총괄부서에서는 재난의 총괄·조정·지원업무를 수행한다.
- ③ 대책본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둔다. 이 경우 실무반 근무자는 당해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공무원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

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8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

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
9.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 실시
10.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
11.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

제19조(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 4.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하는 국·소의 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. 상황실장은 수습주무부서의 과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재난총괄부서에서는 재난의 총괄·조정·지원 업무를 수행한다.
- ③ 대책본부의 실무 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둔다. 이 경우 실무반 근무자는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공무원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

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.

④ 제1항 제4호의 재난의 종류별 수습주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0조(운영) ①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운영하고, 당해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.

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도 대책본부를 운영한다.

제21조(설치장소) ① 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종합상황실에 설치하되 필요할 경우 이 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.

② 본부장은 재난사고시 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재난 수습책임이 있는 부서 및 기관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22조(회의) ① (생략)

② 회의의 구성원은 당해 재난 및 수습 관련 주무부서의 장,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 구조지원기관의 책임관 등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.

제23조(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)

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.

④ 제1항제4호의 재난의 종류별 수습주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0조(운영) ①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고, 해당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.

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도 대책본부를 운영한다.

제21조(설치장소) ① 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종합상황실에 설치하되 필요할 경우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.

② 본부장은 재난사고 시 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난 수습책임이 있는 부서 및 기관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22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회의의 구성원은 해당 재난 및 수습 관련 주무부서의 장,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 구조지원기관의 책임관 등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.

제23조(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)

- ① (생략)
- ②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9조 제3항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.
- ③ (생략)
- ④ (생략)
- ⑤ 본부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기관 또는 근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제24조(인력·물자 등 동원체계의 구축)

-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·물자·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② (생략)

제25조(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)

- ① ~ ② (생략)
-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모니터요원 및 공보전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자문단

제27조(설치)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

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9조제3항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.
- ③ (생략)
- ④ (생략)
- ⑤ 본부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기관 또는 근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제24조(인력·물자 등 동원체계의 구축)

-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·물자·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)

-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모니터요원 및 공보전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

제27조(설치) 법 제75조에 따라

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29조(구성) ① 자문단은 단장 1인 및 부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1. (생략)
2.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소속하는 전문가
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0조(임기) 단장·부단장 및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32조(회의) 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9조(구성)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및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
2.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 기관에 소속하는 전문가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임기) 단장·부단장 및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회의) 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~ ④ (생략)

제33조(협조요청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36조(수당) 구청장은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, 현장 안전점검·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협조요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36조(수당) 구청장은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, 현장 안전점검·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